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재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80

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김재섭·엄태영·서천호

조경태 • 구자근 • 박정하

박상웅 · 최수진 · 신성범

김장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20%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, 이와 비례하여 어르신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.

하지만,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 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 2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・범위・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	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
입비 등의 보조) ①・② (생	입비 등의 보조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	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시
	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
	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
	<u>할 수 있다.</u>
<u> <신 설></u>	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・
	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
	<u> 정한다.</u>